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5.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로 시민편의 제공
- 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안 별표 2)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다.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 2)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
- 라. 현행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적용(안 별표 1)

3. 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2)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요액은[별표1]과”를 “요액은 별표 1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별표2]에”를 “별표 3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수료는[별표2]와”를 “수수료는 별표 2와”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제3조의[별표]”를 “제3조의 별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수료는[별표1]에”를 “수수료는 별표 1에”로, “현금으로”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 제5조 제1항”을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증 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	
나.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	
다.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증명	1통	500	
2.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가.	공부의 등초본 교부(지적관계 제외)			
1)	대장문서	1통	300	
2)	토지도면	1통	300	
3)	건물도면	1통	300	
나.	공부열람(지적관계 제외)			
1)	기본료	시간당	100	
2)	초과료	10분당	100	
다.	인·허가 등록, 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건	400	
나.	환지예정지 분할	1건	300	
다.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건	300	
라.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건	300	
마.	체비지 분할신청	1건	300	
바.	토지대금완납증명	1통	3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증명	1건	300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 칼라발급 1,5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1건	800	
5. 회계에 관한 증명				
가.	원천징수공제증명	1건	300	
6. 주택에 관한 증명				
가.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00	
나.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1주택	800	
7. 지가관련 확인원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	80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1)	신규	1건	5,000	
2)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	
나.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50	
다.	주택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	
라.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	
마.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증명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건	법인 30,000 개인 2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1건	800	
2. 농수산 관계				
가. 내수면 어업 관계				
1)	낙시 어선업 신고	1건	2,500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1건	9,000	
3)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1건	7,500	
4)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지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1건	5,000	
5)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	
6)	내수면어업 연장 허가신청	1건	5,000	
7)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	
8)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9)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10)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	
11)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12)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	
13)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	
14)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	
15)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1건	800	
16)	허가어업 재개 신고	1건	1,000	
17)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1건	2,000	
18)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1건	1,000	
19)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	
20)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21)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 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	
22)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	
23)	어선 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1건	800	
나.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	
다.	농정 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라.	유통축산 관계			
1)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1건	20,000	
2)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변경신고	1건	10,000	
3.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다.	석유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라.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1건	20,000	
마.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 판매소) 신고	1건	10,000	
바.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	1건	30,000	
사.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	
아.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	
자.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	
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	

구	분	기준	요율	비고
카.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	
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	
파.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	
하.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1건	1,500	
4. 건설 관계				
가.	도로부지(지하도, 지하상가, 기타) 점용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나.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신청	1건	500	
다.	공작물등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라.	토석, 사력등 공유수면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마.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바.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사.	하천(공유수면)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	
아.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점용 허가	1건	1,000	
자.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	
	2)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	
	3)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	
	4)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	
차.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1건	500	
카.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	
타.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	
파.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건	5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하.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건	500	
거.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	
너.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1건	1,000	
더.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효력 회복 신청	1건	1,000	
러. 폐천부지 교환신청	1건	1,000	
5. 문화·예술 관계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전국적통일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1건	20,000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1건	5,000	
차. 영화상영관 등록	1건	20,000	
카.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1건	10,000	
타. 영화업 신고	1건	20,000	
파.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	
하.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거.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	
너. 공연장 변경 등록 신청	1건	5,000	

구 분	기준	요금	비고
더.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러.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6. 보건소 관계			
가.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나.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	
다.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40,000	
라.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1건	20,000	
마.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바.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7. 체육시설 관계			
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나.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8. 환경 관계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	
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9. 그 밖에 각종 증명 등 민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으로서 관련 법령이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안전 행정부 고시)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	1건	500	

행정 정보 공개 수수료 기준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 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u>요액은[별표 1]과</u> 같다. 다만,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구미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표2]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요율)	①	----- ----- <u>요액은 별표 1과</u> -----. ----- ----- <u>별표 3에</u> ----- -----.
	②행정정보 공개 청구에 따른 원본 및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 복사(출력물포함)· 복제물에 소요되는 <u>수수료는[별표2]와</u> 같다.		②	----- ----- ----- <u>수수료는 별표 2와</u> -----.
제4조(기준)	①제3조의[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신고하거나 신청 (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 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 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 만, 등록기준지 또는 거소를 같 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4조(기준)	①	<u>제3조의 별표</u> --- ----- ----- ----- ----- -----. -----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징수방법)	① (생략)	제5조(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
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
에 대한 수수료는[별표1]에 규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급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 등록
하는 제증명등
2. (생 략)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환
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
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특수임무수행
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

② -----

- 수수료는 별표 1에 -----
-----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 ① -----

1. ----- 제
2조제2호 -----

2. (현행과 같음)

3. -----

----- 「특수임무유공자 예
우 -----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당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②·③ (생략)	----- ----- -----. ②·③ (현행과 같음)
---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비용 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별표>

수 수 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개정 2014.7.28>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제2조 관련)

종류	표준금액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6조제4항에 따른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0.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신규)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3.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4.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7.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8.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800원
19.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 등록(등록인장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21.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0원
22.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23.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4.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26.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27.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28. 「낙시어선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낙시어선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원
29.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양식어업·정치망어업) 수수료	1건당 9,000원
30. 「내수면어업법」 제6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면허신청(공동어업) 수수료	1건당 7,500원
31.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수수료	1건당 5,000원
32. 「내수면어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33. 「내수면어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34.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내수면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3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3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800원
3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주택당 800원
39.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1건당 30,000원
40.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4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당 2,000원
4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4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4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4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4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4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5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5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1건당 10,000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수수료	
52. 「소방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화재증명원)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53.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원
54.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5.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56.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수수료	1건당 1,000원
57. 「소하천정비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8. 「소하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59. 「소하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교환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0.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61. 「수산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62. 「수산업법」 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63. 「수산업법」 제13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64.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5.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66.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원
67.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500원
68. 「수산업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69. 「수산업법」 제20조에 따른 면허사항의 변경신고(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수수료	1건당 1,000원
70.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	1건당 1,000원

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7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72. 「수산업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 휴업(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3. 「수산업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어업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4. 「수산업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어업권포기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75. 「수산업법」 제41조, 제42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76.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7.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500원
78.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500원
79.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0.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종묘생산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원
81.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 수수료	1건당 1,500원
82.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 수수료	1건당 2,000원
83. 「수산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연장 수수료	1건당 2,000원
84. 「수산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85. 「수산업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6.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87. 「수산업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88. 「수산업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89. 「수산업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고 어업 폐업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0.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1.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 수수료	1건당 800원
92. 「수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허가어업 재개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93.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4. 「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5. 「수산업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수수료	1건당 2,000원

96. 「수산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입어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7. 「수산업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98.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른 2중 이상 자 망 사용승인 신청 수수료	1건당 4,500원
99.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 사 용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0. 「수산자원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 포획· 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0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승강 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0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승강 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0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유 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4,000원
104.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1,000원
105.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6. 「어선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7.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원
108. 「어선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원
109.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 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수수료	1건당 1,000원
110.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제17조에 따른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원
111.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12.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발급 수수료	1건당 1,000원
11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 단에 따른 영화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 단에 따른 영화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1건당 5,000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수수료	
1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화상영권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영화상영권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2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2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8.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2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5,000원
13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당 4,000원
13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 사항 변경신고(양도·양수신고에 한정한다) 수수료	1건당 10,000원
135.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6.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37.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38.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사항 변경 허가 수수료	1건당 40,000원
139.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0.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41. 「의료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20,000원
142.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3.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자격증의 재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
144.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40,000원
145.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의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	1건당 5,000원
146.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7.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 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48. 「전기공사업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업 승계(상속) 신고 수수료	1건당 5,000원
149.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0.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51.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5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53.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1건당 30,000원

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신청 수수료	
15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수수료	1건당 5,000원
155.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 전력시설물 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 수수료	1건당 5,000원
156.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57.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58.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59.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0.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의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1.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2.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3.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0원
164.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45,000원
165.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력시설물 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 수수료	1건당 25,000원
16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100,000원
16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승인 수수료	1건당 50,000원
16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30,000원
16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사업계획 변경승인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신청 수수료	1건당 50,000원

17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20,000원
17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제외한다) 변경 등록 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수수료	1건당 30,000원
17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후단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수수료	1건당 10,000원
17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수수료	1필지당 1,000원 (컬러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17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수수료	1건당 6,000원
17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7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후단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18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수수료	1건당 1,500원
18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반환신고 수수료	1건당 1,500원

소과 실·과		세 무 과
입 안 자	과 장	이 영 활
	담 당	박 희 종
	담 당 자	임 현 철 (480-6892)